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2월 13일, 정부 제출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13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2.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2.18.)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

제3차 국방위원회(2025.2.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원안)

2. 제안설명의 요지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군인이나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하여 연금인 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퇴직 군인이 그 재취업한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같은 신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재직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이 계속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현행법 제13조제2항은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토록 명시하고 있음.

개정안은 군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군인연금인 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퇴직 군인이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같은 직역(군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연금을 계속 정지하려는 것임¹⁾(안 제13조제3항).

1) 개정안은 제13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제2항을 적용할 때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등*의 경우에 제2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안 제13조제3항 각 호

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군인으로 임용된 경우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역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또한, 개정안은 현행법의 일부 용어 및 자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 제53조).²⁾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② (생략) <u><신설></u> ③ (생략)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u> <u>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군인으로 임용된 경우</u> <u>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u> <u>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 -----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23. 7. 11.>

1. 이 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 2) 장애가 해소된→장애 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저하된→낮아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기간에서 제외한다

현행	개정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 4. (생략) 5.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로 인하여 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u>장애가 해소된</u> 경우 ② (생략) 제39조(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악화나 방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u>저하된</u>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생략) 제53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u>기간에</u>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55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u>장애 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u> ----- -----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낮아진</u> ----- ----- -----.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효력발생기간) ----- ----- ----- ----- ----- <u>기간에서 제외한다.</u> 제55조(신고사항) ----- ----- ----- -----.

현행	개정안
1. 제27조제1항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	1. 제27조제1항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 군인연금의 퇴역연금을 지급받는 퇴직 군인이 군인, 공무원, 또는 사립 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법 13조제2항³⁾에 따라 퇴역연금이 지급정지됨.

이 사람이 공무원 등⁴⁾에서 형식적으로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공무원 등의 동일 직역으로⁵⁾ 다시 임용된 경우에도 법 13조제2항에 따라 퇴역연금이 계속 지급정지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현재 국방부의 입장임.

2022년 11월까지 국방부의 종전 의견은 군인연금의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연금 지급이 정지 중에 있다가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퇴직하는 날(예시 1월 31일)이 속한 월(예시 1월)까지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이 사람이 다음 날(예시 2월 1일)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되면 그 임용된 날의 다음 달(예시 3월)부터 퇴역연금 지급이 정지되므로 다시 임용된 날이 속한

3) 법 제13조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4)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포함

5) 공무원을 형식적으로 퇴직한 자가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 등

달(2월)에 퇴역연금 1개월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임.

국방부는 2022년 11월까지 종전 입장에 따라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형식적 퇴직 후 공무원 등의 동일 직역으로 바로 임용된 경우에 1개월분의 퇴역연금을 지급하였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형식적 퇴직 후 동일 직역으로 바로 임용 시 퇴역연금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건 수(A)	5	27	27	15	40
퇴역연금 지급 총액(B)	13	74.7	80	38	109
건당 평균 퇴역연금 지급액 (B/A)	2.6	2.8	2.9	2.5	2.7

□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6) 단서에서 공무원이 퇴직한 날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는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라고 명시하고 있고, 「사립학교교직원법」 제2조제1항제3호7) 단서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군인

6) 3.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신분을 취득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3.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의 사망 외의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연금의 퇴역연금 수급자가 공무원 등⁸⁾에서 형식적으로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공무원 등의 동일 직역으로⁹⁾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법」 등에 따른 법상 “퇴직”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임용되어 근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군인연금인 급여의 지급 정지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에 대하여 법제처도 군인연금법 제13조제2항 등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문」(2022년 11월 28일)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공무원 등이라는 동일 직역 내에서 퇴직 후 그 다음 날 재임용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실업상태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의 퇴역연금 지급 정지 사유 역시 해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방부는 법제처의 이 법령해석(2022년 11월) 이후, 형식적 퇴직 후 동일 직역으로 바로 임용 시에 대한 1개월분 퇴역연금을 미지급하고 있음.¹⁰⁾

- 따라서 퇴역연금 지급정지 사유를 명확히 「군인연금법」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그 입법취지와 함께 법제처의 법령해석(2022년 11월) 이후 퇴역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명확히 해석되어 2022년 11월 이후 형식적 퇴직 후 동일 직역으로 바로 임용 시에 퇴역연금을 일관되게

8)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포함

9) 공무원을 형식적으로 퇴직한 자가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 등

10) 국군재정관리단에서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통보받은 날('22.11.29.)로부터 5년을 역산하여 '17.11.30. 이후부터 '22.11.29.까지 잘못 지급한 퇴역연금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하고 있음.

미지급하고 있는 점, 군인연금 퇴역연금 수급자의 「군인연금법」 상 지급정지 사유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군인연금법」의 용어 및 자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개정 사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개정안은 퇴직한 군인이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날 또는 퇴직한 날 다음 날 동일한 공무원 등으로 재임용된 경우에 군인연금의 지급이 계속 정지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음.

[붙임] 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군인으로 임용된 경우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제32조제1항제5호 중 “장해가 해소된”을 “장해 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단서 중 “저하된”을 “낮아진”으로 한다.

제53조 중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를 “기간에서 제외한다”

로 한다.

제5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7조제1항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 시기) ①·② (생 략) <u><신 설></u>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 시기)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u> <u>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군인으로 임용된 경우</u> <u>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u> <u>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u>
③ (생 략)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

실 및 이전)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 4. (생략)

5.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인하여 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② (생략)

제39조(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장해를 악화시키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악화나 방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실 및 이전)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 장해 정도가 상
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낮아진 -----

-----.

③ (생략) 제53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u>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u> 제55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의 <u>연금지급 정지 사유</u> 2. ~ 4.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효력발생기간) ----- ----- ----- ----- ----- <u>기간에서 제외한다.</u> 제55조(신고사항) ----- ----- ----- ----- -----. 1. 제27조제1항의 <u>연금지급 정지 사유(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2. ~ 4. (현행과 같음)
---	--